



프랑스 신경제규제법

I. 서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든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란 것은 영원한 경험이며 그 한계를 찾을 때까지 갈 것이므로 권력의 남용은 권력으로써 막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권력남용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있어왔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상사회사 분야에서도 권력남용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왔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념이다. 본래, ‘governance’란 용어는 플랑드르(Flandre) 지방에 존재했던 총독(gouverneur)의 ‘통치권’을 의미했던 “gouvernance”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에 도입되어 20세기 후반에 사람과 자원을 관리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기업부문에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의 운영을 개선하고, 회계 분야의 규칙을 정립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주주민주주의(démocratie des actionnaires)’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Gouvernement d'entreprise)”는 경제적 효율 향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경영진, 이사회, 주주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경성법(droit dur)에 의한 강제보다는 연성법(droit mou)에 의한 자율(autorégulation)이다. 관련 당사자들간의 공감대의 산물인 이 규범은 유연성과 적응성 또는 조정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명령적 성격보다는 지도적 성격을 보인다.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보다는 시장의 반응(주주들의 매도결정이나 투자거부)이나 증권당국에 의한 불이익(상장거부 또는 상장폐지)이 추가 된다. 입법자의 개입은 금융부정사건(scandale financier)으로 인해 공적 질서가 위협 받을 때 필요하다.

II. 기업지배구조의 연혁

1. 배경

기업지배구조 개혁 논의는 금융시장에서 기업 자금을 주로 조달하는 영미에서 등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통제의 메커니즘 장애

1980년대 말 미국에서의 금융시장 스캔들과 기업의 부진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영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와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잘못된 경영을 제재하고 실패한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대량매입이 있었지만, 이 방법은 유발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 문제가 있었다.

(2) 주주의 성격 변화

전통적으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었던 지분이 점차 연기금 같은 단체적 관리기관에게 집중되었다. 집단 의식이 없고, 수익성에만 관심이 있는 소액주주들은 점차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대주주로 대체되어갔다. 상당 지분을 보유한 이들 대주주들은 자신의 주주권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통제, 경영진이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때 퇴진 요구 등을 함으로써 행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3) 세계화

기업들이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에 의해 성장을 확보해야 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시장에 손을 써야 한다. 이는 시장의 요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결국 시장의 압력에 의해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모델

대개 동일 인물인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이 책임지고 경영을 하는 미국식과 양자를 분리하는 영국식이 있다.

경영진과 이사진은 신뢰(trust)에 기초하여 ① 주의의무(duty of care, devoir de prudence), ② 충실의무(duty of loyalty, devoir de loyauté), ③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 devoir de transparence)라는 세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1929년의 대위기 직후 발표된 Berle와 Means라는 두 경제학자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소유(주주)와 경영(전문 경영인)의 분리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비대해진 경영진의 권한에 대해 주주들이 비판하고, 경영관행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창설되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감시하고 없애는 일을 담당하면서 주주와 경영자간 관계에서 중용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 이사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수많은 경영진의 배임(malversation)으로 인한 스캔들이 발생한 것이 거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다. 특히 미국변호사협회는 기업경영자 가이드북을 출간(1978)하면서, 이사회 내에서 업무집행이사(사외이사)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거래위원



회는 사외이사의 임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① 회계감사 및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② 이사회 구성을 연구하고 임명과 교체를 제안 또는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③ 경영진의 보수를 점검하고 어떤 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유럽법의 동향

로마조약(Traité de Rome) 이후 유럽공동체 내 회사법의 통합 움직임이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주식회사가 제일 관심사였고, 1960년대 말부터 일련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유럽연합 규칙(règlement)을 수반하는 기업 관련 지침(directive)은 노동법과 회사법의 본질을 개혁하는 국내법 전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이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입법 경쟁도 치열하다. <더 적은 세금, 더 적은 사회부담, 덜 복잡한 형식>이라는 투자자들의 공통된 희망에 부응하여 마치 상사기업들처럼 신 ‘상품’, 즉 맞춤형 규제법제를 내놓기도 한다. 고객은 기업집단들이다. 주저하는 투자자는 설득하고, 더 좋은 환경의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역설적으로, 이 경쟁은 다양성이 원천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들을 유인하는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자연스런 법제 통합의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 프랑스에 기업지배구조 개념 도입

영미의 corporate governance는 프랑스에 빠르게 도입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비에노(Viénot)

보고서에 정리되었고, 드디어 2001년 5월 15일자 법률(n° 2001-420)인 소위 신경제규제법(NRE: nouvelles régulations économiques)은 기업지배구조(gouvernement d'entreprise)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였다. 이 개혁에는 1967년 9월 28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해 창설되어 투자금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 임무를 부여받은 증권거래위원회(COB: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COB와 금융시장위원회(CMF: 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의 합병에 따라 금융시장국(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그 임무를 계승하였다.

III. 신경제규제법의 골자

1. 주요 조문 목록

제1조(상법전 L.233-11조)

금융시장위원회로의 주주약관 전달

제19조(통화금융법전 L.511-6조)

‘소액대출’ 단체를 위한 신용사업 실시 금지

제22조(통화금융법전 L.612-4조)

신용기관과 투자기업의 운영위원회(CECEI) 내부규칙 제정

제26조(통화금융법전 L.621-5조)

증권거래위원회 내에서의 서명 위임

제34조(통화금융법전 L.562-2조)

부당거래의혹신고의 범위 확장

제35조(통화금융법전 L.562-10조)

자금세탁대책위원회 창설

제36조(통화금융법전 L.563-1-1조)

외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제50조(1999년 7월 9일자 법률 제71-1조)

과일과 채소 생산자에게 최저가격 보장

제51조(상법전 L.440-1조)

상사관행과 계약관계를 심의하는 위원회 창설

제58조(농업법전 L.640-3조)

농업생산 합리화

제93조(상법전 L.430-10조)

기업비밀과 제3자 청문 및 결정공표와의 조화

제96조

다중통신의 허가절차

제97조(영화산업법전 제13조)

복합입장카드의 승인

제106조(상법전 L.225-51-1조)

이사회와 이사회위원의 역할

제112조(상법전 L.612-5조)

협회(단체)와 경제활동을 하는 비상업적 사법상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사후감독절차 신설

제113조(상법전 L.820-3조)

회계감사역의 지위 단일화

제115조(상법전 L.225-102-1조)

회사 임원들의 보수, 특권, 임기와 직무에 관해 주주에게 정보제공

제119조(상법전 L.228-1조)

부채 주주의 대표성과 신원 확인

제132조(상법전 225-177조)

근로자의 주식인수계획과 주식구매에 관한 투명성 규정 강화

제136조(보험법전 L.321-10-1조, L.321-1-1조, L.323-1-2조)

재보험회사의 감독

제144조

국제 투자를 위한 프랑스의 공적 기구 창설

2. 금융법적 개혁

(1) 개관

1999년에 있었던 BNP은행, Société Générale 은행, elf사, TOTAL사 등 눈길을 끄는 공개거래에서 시작되었다. 적용범위는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특히 은행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 조치로서, 공개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금융시장위원회(CMF)에 보고할 의무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개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대상을 주식의 양도나 취



득에 관한 특혜조건을 예정하고 있는 전 조항으로 확대하였다. 반대로,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적어도 0.5%를 포함하는 계약만이 요구의 정도를 완화해준다.

위반시 제재는 민사벌이다. 조항 또는 계약의 효력은 정지되고 당사자들은 공매기간 동안 그(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CMF가 가진 협의주(action de concert)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위해 신조문은 날짜를 보고하고 공개를 보장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주평등과 시장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공매기간 동안 주문을 집중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법 시행 이후에는, 공매 대상인 금융수단에 관한 모든 거래는 규제된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소지자는 2년간 의결권이 박탈된다. 이 법률은 그간 많이 논의된 조치를 담고 있는 바, 공개거래시 대상 기업의 운영위원회는 주식공개거래의 제안자에 대한 청문회(최소 3일전 소집되어야 함)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법전에서는 단순하게, '금융시장의 안전과 투명성에 관한 1987년 8월 2일자 법률 이래, 기업운영위원회가 공개거래의 제안자로 하여금 그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었다. NRE 법률은 기업운영위원회가 그 제안에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률은 또한 일반적 관행을 공식화하였다. 기존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 법률은 입찰자에게 고용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률은 CMF가 언제든지, 3개월

지난 공매절차를 마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공매절차의 운영을 더 잘 제어하려는 CMF의 의지가 있다. 청약기간은 시장의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하면 짧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CMF의 이 새로운 권한은 불복절차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주식 공개거래에 특유한 조치로서, 이 법률은 신용기관에 관한 공개거래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CECEI 의장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총재에게 적어도 계획안 제출 또는 공고 8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규제기관

이 법률은 은행, 금융시장 그리고 보험 분야의 규제기관의 통합에 착수했다. 특히 기업인가 분야와 이 기관들의 감독 및 명령권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 법률은 신용기관, 투자서비스업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인가요건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제로, 조문들은 은행과 투자회사에 대해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인원이 기업활동의 방향 결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통화금융법전 L.511-10조와 L.532-4조). 앞으로 이 사람들은 필요한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이 요건들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이 요건들은 새로이 보험법전에도 도입되었고, 보험회사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률은 신용기관, 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인가는(예를 들어 재무구조에 관한) 특별 또

는 부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고, 약속준수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인가가 철회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행정당국의 관행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반대로, 동법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속하는 신용기관에 관해서, CECEI가 공익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인가요건의 완화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동법은 신용공급 독점의 예외를 확대하였다. 실업자 또는 최저소득층에 의한 기업창업과 안전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단체들을 위하여, 동법은 규제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화하고 조화시켰다. CMF 의장은 Paris 대심재판소장에게, 모두에게 법규에 따를 것과 위법행위를 그만둘 것 그리고 결과를 제거할 것을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판관은 모든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형사소추의 경우에 공소결정 이후에야 확정되는 벌금강제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MF가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명시되었다. 이는 그 활동에 그간 부족했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험감독 위원회는 은행감독위원회와 COB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는 권한을 계승했다. 보험감독위원회는 전 보험회사에 그들에게 적용될 법령규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징계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마치 은행감독위원회가 신용기관이나

투자회사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감시절차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3) 조직범죄로부터 생긴 금전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국제협회의조정결정기관(GAFI)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히 도박장과 보석·골동품·미술품 판매 분야로까지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민사적 효과를 지닌 특별조치로 비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의 무한한 유지를 누렸던, 1978년 1월 4일자 법률의 시행일인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민사회사들은 법률 공포 이후 18개월 이내, 즉 2002년 11월 16일 이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4) 다양한 조치들

주된 사항은 은행과 금융 부문의 보상에 관한 것이다. 이 보상은 회원(금융)기관 또는 회원기관의 고객의 실패에 대한 대책수단의 효과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은행과 금융 부문의 주된 관심사는 시스템상 리스크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상의 것으로부터 은행과 금융기관의 파산이란 결과를 막기 위한 차단 조치가 증가하였다.

결국, 법적 관점에서, 해법은 은행거래 및 금융거래에서의 보상의 집단소송에 대한 대항력에 있다. 그로부터 여러 조치들이 법률 안에 생겼다.

법률은 우선, 자발적으로 포괄적 보상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수단의 거래와 관련된 부채와 채권의 보상을 구성하는 두 개 이상의 기본 협정이 존재한다면, 당사자들은 각자의 거래에서 결과되는 계좌의 포괄적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유동자산거래 관련 기본협정을 위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종합화(포괄)는, 세분화된 보상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하여금 기관에 대한 집단소송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자들은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러한 협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다수의 기본 협정들은 포괄적 보상을 위해 다른 기본협정들을 참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global meeting”의 공식 인정은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률은 이어서 2개의 국제사법적 사항을 명시했다. 은행간 결제 시스템 또는 유럽 경제권 금융기관간 결제 또는 배달 시스템 참여자에 대한 집단적 소송이 개시되었을 때, 그 시스템 참여로 생기거나 그와 연결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는 그 시스템을 규율하는 법률에 의해, 그 법률이 EEE 협정 가맹국의 법률이란 조건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적용될 것은 집단소송절차 법률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 또는 결제-배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은 또한, 외국법에 기초해 발행되는 금융수단, 어음, 채권, 금액 또는 유사한 모든 수단들이 어떤 장부, 계좌 또는 중앙 수탁자나 EEE 회원국인 외국 소재 중앙 기탁소에 등록된 경우, 그리고 은행간 결제 시스템 또는 금융기구 결제-배달 시스템 참여에 따른 지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보증에 놓였을 때, 보증 수익자의 권리는 등록지의 적용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3. 회사법 개혁

회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 간에 근본적 연결점은 없지만, ‘신경제’ 관련 조치, 사회경제 관련 조치, 자유직 관련 조치, 일시적 기술적 조치 등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재결합될 수 있다.

(1) ‘신경제’ 관련 조치들

‘신경제’ 적 기업의 설립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들로 입법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야만 했다.

① 주식인수 또는 매수 선택권

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정 이외에, 법률은 주식인수 선택권 제도를 축소와 투명성의 의미에서 수정하고 있다. 이사회나 경영자가 최초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38개월로 줄였고, 고려할 본질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상장 주식의 인수가격 결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통상주주총회에 발행될 옵션과 인수된 주식을 보고할 용도의, 특별 보고서 작성 의무를 신설했다. 보고서에 실려야 할 세부사항은 매우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항들은 직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임원에 관한 기명의 것이다.

요컨대, 이제부터는, 관련회사 주식의 인수권을 주는 옵션(선택권)은 회사가 상장된 경우에만 경영진에게 인수될 수 있다.

② 채무(회사채) 발행

법률은 회사채 발행을 자유화하면서 주식에

의한 회사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이 제부터, 회사는, 두 대차대조표 승인을 기다릴 수 없다. 특별히 임명된 회계감사역에 의한 능동적·수동적 감사를 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제도와 특별우대제도로의 회부는, 만약 회사채 발행의 수익자가 사전에 인정 받고, 또 주주라면, 그는 감사역의 보고서 승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③ 회사의 전환(변모)

법률은, 합리적이고 예상된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감사역의 개입을 일반화하고 있다. 반대로, 간이주식회사(Société par anonyme simplifiée : SAS)의 다른 형태의 회사로의 전환은, 주식회사의 전환에 관해 예정된 요건(2년 존속과 대차대조표 2회 승인)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쉽게 하고 있다. 이것은 만약 SAS가 신속한 자금공모를 원할 경우,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④ 유한회사(SARL)의 부분적 납입

앞으로, 유한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 SARL)로의 금전출자는 투자의 5분의 1까지만 납입되면 된다(제124조). 추가의 주금납입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한번 또는 여러 번 개입된다. 그 대신, 법률은, 1867년 7월 24일자 법률 제51조(상법전 L.231-5)를 적용하여 SARL의 신탁 자본금의 2분의 1만 납입된다고 받아들였던 관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부터는, 협동조합만의 이 완화된 제도를

누릴 것이다. 다른 기관들은 과도기적으로, 회사 자본의 납입을 위한 5년의 기간을 갖는다.

(2) 사회연대경제 부문에 관한 조치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는 해도 사회연대경제 부문도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임금인상이다.

① 규제되는 협약제도 확대

최근의 불행한 경험을 고려하여(ARC, NEF), 법률은 경제활동을 하는 비상업적 사법상 법인과 단체에 규제되는 협약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률은 다양한 법률상 또는 규약상 조직에 규칙들을 채택해야 했다.

② 회계감사역의 지위 통일

회계감사역의 지위를 그가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가 어떤 것이든지간에 통일시켰다. 이러한 통합은 비록 주식회사들의 규칙 추종이 상호공제조합, 재해대비제도, 보충연금제도 같이 아주 특수한 구조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낳더라도, 반가운 일이다. 더 넓은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은 사회경제 분야의 조직체에 대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식인수 선택권 확대

법률은 주식인수선택권 분야를 투자증서, 협동조합증서, 그리고 사원협동조합 증서, 즉 사회경제 분야의 기업들(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에서 발행되는 투자증서와 비견할 만한 증권으로 확대했다.



법률은 또한 같은 영역에서, 주식인수선택권을,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공제조합 조직에서의 중앙기관 또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신용기관으로 확대했다.

(3) 자유직 부문 관련 조치들

자유영업 간이주식회사들에 대해, 그것이 1인 회사라는 이유로, SAS에서 더 이상 제외할 이유가 없었다.

(4) 기술적 조치들

① 규제되는 협약

주된 새로운 사항인, 규제되는 협약제도는 5% 이상 지분을 지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와 체결된 협약과 타인명의로 체결된 협약에 확대되었다. 또 다른 새로운 사항은 그간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협약들(통상의 조건에서 체결되는 일상 사업활동에 관한 협약)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이제부터 주주들과 회계감사역에게 통보된다. 투명성과 주주보호를 위한 이 새 제도는 특히 기업집단(그룹) 내에서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② 회계감사역

회계감사역 윤리규정을 공식화하였다. 이 직업은 공인회계사 직업과 관련하여 조직되고 자율화된다.

③ 이행명령

Marini 보고서에서 착안한 조치이다.

법률에 의해 강제된 통보서류를 받지 못한 상

사회사의 모든 사원은 벌금강제를 동반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벌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의 개인부담으로 한다. 벌금강제를 동반한 명령은 규정상 문서를 제때 상업·회사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된다. 동일한 명령은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자본금의 완전한 납입에 필요한 불입청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판사는 서류전달과 절차를 담당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주주의 신원 확인

발행기관과 시장의 영원한 관심사인 상장회사의 주주확인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다.

1987년 6월 17일자 Baladur 법률 이래, 식별 가능한 무기명증권이나, 주주확인장치가 존재해 왔다. 확대차원에서 개혁된 것은 바로 이 제도이다. 요컨대, 새 제도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는 증권교환기구(옛 Sicovam)에 대한 정보 이외에, 제재에 따라서, 신고된 소지자 뒤에 숨어 있는 자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만약 확인된 소지자가 증개인이란면, 그는 진정한 증권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는 기명증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명된 소지인에게 질문이 전달된다. 2개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투표권과 배당금수령권 행사가 기대된 정보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이 정보가 예정된 전자기간에 전달되지 않

는다면, 투표권과 배당금수령권의 일시적 상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5년의 한도 내에서 계속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은 주주총회 부재자들의 대표를 조직한다. 이 대표(대리)는 중개인의 단수 혹은 복수의 계좌에 등록(기재)함으로써 실시된다. 그러나 완전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⑤ 통합회계보고 승인

법률은 Marini 상원의원이 그의 “회사법개혁” 보고서에서 한 제안을 은밀히 받아들였고, 통합회계보고를 매년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이 의무는 주식회사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그 연계된 조직이 어떤지를 불문하고 일반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⑥ 감독과 협력주(協力株)의 개념

이 두 개념의 연계가 불완전하다는 것과 후자의 개념이 논의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법률은 이 협력주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자본협력”(투표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합의)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모든 “정치적” 목적(회사에 대한 공동정책의 실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정치적 목적은 오로지 “정치적 협력”(투표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에만 연계되어 있다.

⑦ 1인회사의 해산

법률(제103조)은 단독소유회사의 해산에서 나오는 재산의 포괄이전은 그 유일한 사원이 자연인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민법전 제1844-5조를 보충하고 있다. 법률은 1인회

사의 해산에서, 비록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는지라도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개인책임을 지게 되는, 유일사원에 관한 위험한 결과에 중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자연인인 유일사원에게만 해당된다. 달리 말하면, 유일사원이 모회사인 경우, 이 모회사는 해산된 자회사의 부채 전부를 승계한다. 이 예외는 모회사의 금전책임 추구를 위해 법인격을 배제하는 영미식 법인제도와 유사하다.

IV. 평가와 전망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다양한 새로운 조치들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혁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특히 동거정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일회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도 없지 않다. 그에 따라 체계적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고, 산만한 조문들의 나열이자 뒤범벅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설 새 없이 몰아친 입법은 법조문의 과잉을 낳았고, 이는 실무가들에 의한 내용상 발전을 어렵게 하였다. 그 결과 기관들로서도 통일된 해석이나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법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의 권리 보장을 주 테마로 하면서 노사관계의 현대화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 그 내용상 연계가 필요하지만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주식회사법 내에서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한 비판도 있다. 노동법 규정들을 회사법 안에 담은 것 역시 그 혁신적 의미만큼의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긍정적 의미가 많다. 정치적 관점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Enron, Vivendi 등등)들의 여파는 국제 여론이 충격받은 바 그대로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혁이 요구되고, 결정과정을 위한 더 엄격한 통제와 더 많은 투명성에 관한 목소리가 표현되었다. 법경제적 관점에서는, 채택된 조문들의 더 엄격함 덕분에, 프랑스는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한 금융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주주들의 참여권과 감독권이 확대되었다. 프랑스에서, 투자자는 이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할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NRE 법률은 단지 억제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줄 수 없었던 대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

의 보수를 받으며, 얼마동안의 임기로, 경영하는가? 그룹간 체결된 협약들은 무엇인가? 그룹 안에서 누가 문제인가? 등등. 그리고 투자의 리스크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담당자(책임자)의 지정(임명)과 책임의 분배도 더 쉬워질 것이다. 투명성은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것은 결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장래의 과제로는 조세문제와 회사법 문제의 조화, 기업법의 실재를 용이하게 하려는 배려, 신기술과 법률의 조화, 노동법 편입의 보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